

#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통합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 교육

전주완산서초등학교

## I 장애학생의 인권이해

### ▣ 장애학생의 인권, 왜 중요할까?

모든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존중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일상 생활 속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러한 어려움은 장애인 본인의 신체적·정신적 특성과 함께 사회적인 요소가 더해져서 생겨난 것입니다. 각각의 장애에 알맞은 사회적인 관심과 배려가 있다면 더 이상 장애는 장애로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 ▣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란?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는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모두가 지켜야 할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중요한 몇 가지를 알아보시다.

〈차별금지법 영역〉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장애인을 돕고 있는 사람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b>고용(제10조, 제11조)</b></p> <p>사용자는 근로관계에서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되며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의 개조와 같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교육(제13조, 14조)</b></p> <p>장애인의 입·전학을 거부하거나 강요할 수 없다. 또한 모든 교육 활동에 있어 장애학생의 참여를 제한·거부할 수 없으며, 교육책임자는 교육활동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이동 및 교통수단(제19조)</b></p> <p>이동 및 교통수단 이용에 있어 장애인이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등의 출입 및 사용을 거부해서는 안 되며,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제공해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괴롭힘의 금지(제32조)</b></p> <p>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하거나 학대 및 금전적 착취를 해서는 안 된다.</p>

## II 통합교육 바로 알기

### ▣ 통합교육이란?

장애학생이 일반학교에서 장애 유형·장애 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 법령]

- 교육기본법 제 18조 (특수교육)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1조 (통합교육)

▣ 통합교육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

비장애학생	장애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간의 다양성을 수용하고 유연한 사고를 하는 데 도움이 됨</li> <li>• 타인에 대한 배려와 사회적 책임감이 향상됨</li> <li>• 장애학생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오해 등의 편견을 줄일 수 있음</li> <li>• 장애로 인한 제한을 극복하고 성취하는 장애학생의 모습에 동기 부여가 될 수 있음</li> <li>• 인권감수성 향상에 도움이 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장애학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의사소통 기술과 사회적응 기술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됨</li> <li>• 지역사회 참여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실질적 생활 경험을 제공받음</li> <li>• 비장애학생과의 동등한 교류를 통해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음</li> <li>• 분리교육에서 오는 장애의 낙인과 고립감에서 벗어날 수 있음.</li> <li>• 연령에 맞는 교육 경험의 폭이 넓어짐</li> </ul>

### III 장애학생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는 일반학생 대상 학교 폭력 사안에 적용하는 처벌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수위의 징계를 적용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장애학생의 보호)]

- ①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 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 전문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 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 제6항을 준용한다.

### IV 장애학생 성폭력 예방교육

성폭력이란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성과 관련하여 상대방을 불쾌하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성폭력은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의 동성 사이에도 성립됩니다. 장애학생 대상 성폭력 발생했을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는 일반학생 대상 성폭력 사안에 적용하는 처벌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수위의 징계를 적용합니다.